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 445호
개정	2006. 10. 13	규칙 제 517호
	2007. 7. 1	규칙 제 542호
	2008. 12. 29	규칙 제 568호
	2009. 9. 1	규칙 제 586호
	2010. 12. 17	규칙 제 619호
일부개정	2012. 9. 6	규칙 제 687호
일부개정	2013. 3. 8	규칙 제 701호
일부개정	2013. 4. 30	규칙 제 704호
일부개정	2013. 12. 2	규칙 제 718호
일부개정	2014. 10. 8	규칙 제 766호
일부개정	2016. 7. 22	규칙 제 850호
일부개정	2017. 5. 10	규칙 제 874호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 888호
일부개정	2018. 10. 16	규칙 제 936호
일부개정	2019. 12. 23	규칙 제 991호
일부개정	2020. 7. 2	규칙 제1004호
일부개정	2020. 12. 21	규칙 제1021호
일부개정	2021. 4. 29	규칙 제1030호
일부개정	2021. 6. 30	규칙 제1040호
일부개정	2022. 5. 17	규칙 제1074호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1094호
일부개정	2023. 12. 8	규칙 제1118호
일부개정	2024. 7. 15	규칙 제11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 2016. 7. 22, 2017. 5. 10, 2021. 6. 30>

제2조(권한 재위임사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3>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2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2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6, 2016. 7. 22, 2023. 12. 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0. 13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6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8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30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8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2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0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1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9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7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부칙 〈2024. 7. 15 규칙 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7. 15>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2조 제1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정과	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납세의 고지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정세액 제외, 골프회원권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2. 부과취소 및 변경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정세액 제외, 골프회원권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3. 납기 전 징수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5.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6. 가산금 및 독촉 7. 도세징수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8. 과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 이자계산 9. 서류의 송달 10. 공시송달 1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12. 도세부과에 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40조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징수과	1. 도세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체납처분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체납처분 제외] 2. 정리보류 등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3. 관허사업의 제한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3조까지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아동 보육과	1. 어린이집 행정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	채납자 제외] 4. 채납징수유예(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채납처분 등 유예)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채납자 채납처분 유예 제외] 5. 도세의 시효소멸 6. 서류의 송달 7. 공시송달 8. 징수촉탁 9. 예탁 10. 세무공무원의 결문검사 11. 도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12. 도세에 관한 범죄사건의 처리 [삼백만원 (가산금제외) 이상 채납자 제외] 13. 인도명령 14. 번호판 영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제105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같은 법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 법 제153조 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법 제131조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행정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민생경제과	1.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2. 통신판매업 변경	같은 법 제12조제2항
		3. 통신판매업 휴·폐업	같은 법 제12조제3항
		4.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위반행위 조사	같은 법 제26조
	2. 방문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방문판매업 변경	같은 법 제5조제2항
		3. 방문판매업 휴·폐업	같은 법 제5조제3항
		4. 방문판매업 지도·점검	같은 법 제43조
	3.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전화권유판매업 변경	같은 법 제5조제2항
		3.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	같은 법 제5조제3항
		4. 전화권유판매업 지도·점검	같은 법 제43조
농업정책과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변경 농지전용면적1,500제곱미터이하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전용관련 협의는 제외한다)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 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다만, 재위임사항에 한함)	농지법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농지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토지정보과	1.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다만, 재위임사항에 한함)	농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4. 원상회복 명령 등 (다만, 재위임사항에 한함)	농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정책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정함)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2. 연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2. 도유행정재산의 관리 및 교환 용도폐지 승인의 신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국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
		2. 사용료 징수·조정·면제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같은 법 제36조
		4. 청문	같은 법 제37조
		5.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6.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7.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	같은 법 제74조
		1. 도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같은 법 제19조
		3. 도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도로관리과	1.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2.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3.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수리 4. 회사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승계 신고수리 5.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승계 신고수리	도로법 제73조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한때에 조치를 취하는 다음의 사무	1. 허가취소 2. 허가효력의 정비 3. 허가조건의 변경 4. 공사의 중지 5. 공작물의 개축 6. 건물의 이전명령	도로법 제96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다음의 사무	1. 공익상 필요한 조치	도로법 제97조
	5. 지방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점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및 유지를 취하게 하는 사무	1.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2.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의 시행	도로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
	6. 지방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법 제35조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로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행위자에게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다음의 사무		
7.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토지형질변경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도로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8. 지방도의 접도구역 안에서 행하는 다음의 사무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 · 증축건물의 부가증치허가	도로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무	1.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2. 도로의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3. 점용자의 점용고시의 준공검사	도로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62조	
10. 도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법 제55조	
11. 지방도상에 설치된 조명시설(터널, 지하차도 내 조명 시설 포함)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방도상에 설치된 조명시설 (터널, 지하차도 내 조명시설 포함)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12. 도로환경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도로를 손괴 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도로법 제75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생태하천과	1. 도유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지방 하천(국가 하천 포함)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도유재산(폐천부지)의 관리 및 대부 1.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2. 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3.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4.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5.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 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6.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 7.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징수 8.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9.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10.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1.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구청장이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정함) 12. 보고 및 출입 등(구청장이 권 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3. 청문의 실시(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8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경기도 도유폐천부지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7항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5항, 제6항, 제9항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정함)에 관한 다음의 사무	14.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5.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1. 국유재산 사용허가·갱신 2. 사용료 징수·조정·면제 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4. 청문 5.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6.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 7.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27조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미래성장 전략과	1.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등(다만,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1만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설비에 한정한다) 2.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52조
환경정책과	1.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무중 사업장 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대기, 수질 복합 1개 시설이라도 3종 내지 4종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제외)	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수리 2.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4. 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5. 측정기기의 부착 등 6.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7.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3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8.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9.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같은 법 제41조
		10.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
		11.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44조
		12.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8조
		13. 과태료의 징수	같은 법 제82조
		14. 과징금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43조
		15.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72조
	2. 기타 수질 오염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및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제60조
		2.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60조
	3. 배출 등의 금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배출 등의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4.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 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대기, 수질 복합 1개시설이라도 3종 또는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영업정지명령 3.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후대기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에서 위임된 사무중 사업장 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대기, 수질 복합 1개 시설이라도 3종 내지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수리 2.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4. 측정기기의 부착 등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7.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등의 명령 8.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9.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10.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11. 보고명령 및 검사 12. 과태료의 징수 13. 과징금 부과징수 등 14.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1.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1. 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 2. 전문정비사업 등록 및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8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6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자원순환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 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1.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2.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3. 학교·연구기관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 목적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 4.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3항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오염물질 측정결과와의 접수 2.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4.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및 측정결과 공개 5.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시정 및 비용징수 6.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및 차액반환 8.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 등 9.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10.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대상시설의 통지 11. 비용명세신고의 수리 12.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 13.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31조제9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4.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15.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16.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17. 토지용도·용도 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2.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9조의2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의 재활용 인정 2.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39조의2
	5. 폐기물 처리신고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등 2.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3. 폐기물 처리명령 4. 청문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제39조의3 같은 법 제61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6. 위임사무 제1호 부터 제5호에 따른 다음의 사무	1. 보고서의 제출명령 2. 보고명령 및 검사 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 4.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5. 의견제출 6. 대집행 7.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의2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8조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2.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사용 개시 신고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4.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6. 휴업·폐업등의 신고 7. 보고서의 접수 등 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10. 청문 11. 지도·점검 및 과태료부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7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1. 재활용품, 1회용품 및 포장폐기 물 관련 지도·점검 2. 삭제 <2020. 7.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차량등록 사업소	1. 자동차 압류 등록·해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지방세,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사무관련 채납처분에 한정함)	1. 자동차 압류등록·해제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3

[별표 2] <개정 2021. 6. 30>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정과	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고지서 교부 및 송달 2. 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 (법인 취득세 제외) (읍면장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20조
징수과	1. 도세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납세증명서 발급 2.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3. 체납액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